

#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현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,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기존 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6조)

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

2)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3조제6항제1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3. 9. 14. ~ 10. 3.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: 원안의결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존속기한)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를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6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## □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

제13조(단지조성비의 지원) ① ~ ⑤ (생략)

⑥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2. ~ 6. (생략)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2. 미첨부 근거 규정 :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 
제3조제5항제1호
3. 미첨부 사유 :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김 남 섭
연락처	(033) 330 - 2745